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81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성원
김상훈 · 이종배 · 윤상현
조지연 · 김승수 · 성일종
이양수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예비군부대”를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로, “훈련비”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훈련비”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훈련비 등 지급) <u>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u>훈련비</u>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u>지급할 수 있다.</u></u></p>	<p>제11조(훈련비 등 지급) <u>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u>----- ----- ----- -----<u>「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훈련비</u>----- -----<u>지급하여야 한다.</u></p>